

협력업체운영업무절차 개정내용

현행	개정
제 4조 (용어의 정의) 이 절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신설) 5. ~ 12. (생략)	제 4조 (용어의 정의) 이 절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현행과 같음) 5. “보안부서장”이란 회사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을 말한다. 6. ~ 13. (현행과 같음)
제 5조 (관련부서장의 권한과 책임) 협력업체 운영과 관련된 부서장의 권한과 책임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각 업무의 전결권한은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1. ~ 4. (생략) (신설)	제 5조 (관련부서장의 권한과 책임) 협력업체 운영과 관련된 부서장의 권한과 책임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각 업무의 전결권한은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1. ~ 4. (현행과 같음) 5. <u>보안부서장 : 협력업체 보안 감사 및 협력업체 보안 활동 분야 평가 총괄 등</u>
제 6조 (협력업체 운영심의회 구성) ① (생략) ② 운영심의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3. 당연직위원은 주관부서장, 경영기획담당부서장, 총괄부서장 및 품질안전환경담당부서장으로 한다. 다만, 협력업체윤리행동강령 위반 심의는 <u>감사담당부서장을</u> 당연직위원에 포함한다. 당연직 위원 외의 위원은 위원장이 당해 심의에 필요한 직원을 위원으로 선임한다. 4. (생략) ③ (생략)	제 6조 (협력업체 운영심의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운영심의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 2. (현행과 같음) 3. 당연직위원은 주관부서장, 경영기획담당부서장, 총괄부서장 및 품질안전환경담당부서장으로 한다. 다만, 협력업체윤리행동강령 위반 심의는 <u>감사담당부서장을, 보안 사고 관련 심의는 보안담당 부서장을</u> 당연직위원에 포함한다. 당연직위원 외의 위원은 위원장이 당해 심의에 필요한 직원을 위원으로 선임한다.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
제 25조 (협력업체 사업수행실적평가) ① (생략) 1. ~ 2. (생략) 3. 평가항목별 평가 담당부서는 다음과 같다. 가. ~ 나. (생략) (신설) 4. 사업부서장은 해당 발주사업을 감독하는 직원 중 부서장을 제외한 직위자를 제3호 각 목에 따라 평가자로 선임하되, 소관 부서 평가자는 2인 이상을, 품질부서 평가자는 1인 이상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직위자가 2인 미만인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스페셜리스트 등 비직위자를 포함하여 평가자를 선임할 수 있다. 5. (생략) ② (생략)	제 25조 (협력업체 사업수행실적평가) ①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평가항목별 평가 담당부서는 다음과 같다. 가. ~ 나. (현행과 같음) <u>다. 보안 항목 : 보안부서</u> 4. 사업부서장은 해당 발주사업을 감독하는 직원 중 부서장을 제외한 직위자를 제3호 각 목에 따라 평가자로 선임하되, 소관 부서 평가자는 2인 이상을, 품질부서 평가자는 1인 이상을 선임 <u>하여야 하고, 보안부서 평가자는 보안부서장이 지정한 직위자로 선임한다.</u> 다만, 해당 직위자가 2인 미만인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스페셜리스트 등 비직위자를 포함하여 평가자를 선임할 수 있다.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 27조 (협력약정의 정지 및 해지) ① 주관부서장은 협력업체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 주관부서 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정지를 업체에 통보함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심의회 심의 및 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아 협력약정을 해지한다. 다만, <u>1호, 2호, 16호, 18호</u>의 경우에는 운영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해지 이후에는 각 호에 따른 제재사유별 재등록 제한 기간 동안 해당 업체에 등록신청을 제한하여야 하며, 제5호, 제13호, 제14호의 경우에는 위반사항이 중할 경우 영구제한을 할 수 있다. 1. ~ 12. (생략)	제 27조 (협력약정의 정지 및 해지) ① 주관부서장은 협력업체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 주관부서 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정지를 업체에 통보함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심의회 심의 및 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아 협력약정을 해지한다. 다만, <u>제1호, 제2호, 제16호, 제18호</u>의 경우에는 운영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해지 이후에는 각 호에 따른 제재사유별 재등록제한 기간 동안 해당 업체에 등록신청을 제한하여야 하며, 제5호, 제13호, 제14호의 경우에는 위반사항이 중할 경우 영구제한을 할 수 있다. 1. ~ 12.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
13. <u>사업수행과정에서</u> 취득한 회사의 기술 및 경영기밀을 무단 유포 또는 누설한 <u>경우</u> : 재등록제한 2년 또는 영구제한 14. ~ 18. (생략) ② 총괄부서장, 소관부서장, 사업부서장은 주관부서장과 함께 소관 협력업체가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상시 확인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해당됨을 인지한 경우 즉시 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 ⑤ (생략) ⑥ 주관부서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사유로 인하여 협력약정을 정지한 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u>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15조</u>를 준용한다. ⑦ ~ ⑩ (생략)	13. <u>사업수행과 관련하여</u> 취득한 회사의 기술 및 경영기밀을 무단 유포 또는 누설한 <u>경우와 심각한 보안위규 사항 또는 보안사고 발생 시</u> : 재등록제한 2년 또는 영구제한 14. ~ 18. (현행과 같음) ② 총괄부서장, 소관부서장, 사업부서장, 보안부서장은 주관부서장과 함께 소관협력업체가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상시 확인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해당됨을 인지한 경우 즉시 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주관부서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사유로 인하여 협력약정을 정지한 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u>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 사무규칙 제16조</u>를 준용한다. ⑦ ~ ⑩ (현행과 같음)
별지 제5호 서식 <u>표준협력약정서(별첨 1)</u> 별지 제7호 서식 <u>사업수행실적평가표(별첨 2)</u>	별지 제5호 서식 <u>표준협력약정서(별첨 1)</u> 별지 제7호 서식 <u>사업수행실적평가표(별첨 2)</u>
부 칙 1. (시행일) 이 절차는 2018.1.1.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절차 개정시행일 현재 결재 진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절차에 따른다.	

표준협력약정서

경북 김천시 혁신로 269에 주소를 둔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이하 "약정자"라 한다)와
에 주소를 둔 (이하 "약정상대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사업협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 1 조 (목적)

본 약정의 목적은 약정자와 약정상대자가 국내·외 사업에 공동참여하는데 있어 사업품질 향상과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양사간의 상호협력의 기본원칙을 정하는 데 있다.

제 2 조 (협력분야 및 범위)

①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엔지니어링"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법, 소방시설공사법, 측량법에서 정의한 기술용역 등을 말한다.
2. "전문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전문공사, 전기공사법상의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법상의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법상의 소방시설공사 등을 말한다.
3. "기타지원"이란 설계엔지니어링, 전문 건설공사 부문의 지원 및 기자재 구매 또는 기타 일반 분야의 지원을 말한다.

② 양사는 사업을 공동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전문분야에 상호 협력한다.

1. 설계엔지니어링사업 (분야:)
2. 전 문 건 설 공 사 (분야:)
3. 기 타 지 원 (분야:)

③ 제2항의 협력분야에 대한 협력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의 공동수행
2. 기술인력의 상호지원
3. 사업정보 및 자료의 상호교환

④ 제3항에 규정된 양사간의 협력범위는 상호협의를 의하여 조정 또는 추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약정서를 갱신하여 협력약정을 체결한다.

제 3 조 (협력방법)

① 양사는 국내·외 사업의 공동개발에 필요한 정보 및 기술자료를 상호 교환하며, 본 약정의 목적 및 협력범위 내에서 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② 양사는 국내·외 사업의 공동참여 또는 상호지원이 필요할 경우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요청하고, 쌍방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구체적인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③ 양사는 국내·외 사업개발 및 수행을 위해 기술 또는 인력이 필요한 경우, 양사의 소속인력을 상대방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근무조건은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

제 4 조 (비밀준수 및 지식재산권보호)

① 양사는 본 약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수행 또는 협력과정에서 지득한 상대방의 지식재산권, 기타 정보 및 자료는 본 약정의 기간 만료 전후를 막론하고 비밀을 엄수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영업 또는 비영업 목적으로 단독으로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개할 수 없다.

② 상대방의 지식재산권이 회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을 통하여 적법하게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본 약정 체결의 취지에 따라 효율적인 협력을 위해 최소한의 필요한 상대방의 경영, 기술, 인력현황, 사업수행경험은 공개할 수 있으며 제3자에게는 공개할

수 없다.

(신 설)

제 5 조 (보증 및 책임)

- ① 양사는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정보 및 기타 자료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위하여 모든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 ② 본 약정에 따른 사업의 공동수행 중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의 배상 책임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며, 개별사업계약 체결 시 상호 협의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정한다.

제 6 조 (상호협조 및 신의성실의무)

- ① 양사는 본 약정서 제1조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제2조에서 정한 협력분야와 범위에 정한 내용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에 신의성실을 바탕으로 호혜평등의 원칙하에 최대한 상호 협조한다.
- ② 양사는 상호 당초 협력약정을 체결한 시점에서 확인된 자격과 요건을 협약이 지속되는 전 기간동안 유지할 의무가 있다.
- ③ 어느 일방에서 제2항의 요건과 자격이 유지되지 못할 경우 협약은 무효로 하며, 이로 인한 제반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다. 다만, 이의 사유가 상대방으로부터 기인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7 조 (분쟁해결)

본 약정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사는 상호이익을 위하여 공정과 화합의 정신으로 상호 원만히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약정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다.

제 8 조 (유효기간)

- ① 본 약정의 유효기간은 양사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4년간(협력약정 정지 기간 포함)으로 한다. 다만, 동 기간 중에는 매년 정기평가를 통해 협력 약정이 유지되며, 정기평가 결과 부적격으로 판단되면 협력약정이 해지된다. 이 경우 약정상대자가 통보 받은 해지일(정지를 통해서 해지한 경우에는 통보 받은 정지일)부터 약정은 해지된다.
- ② 약정상대자는 약정 만료 3개월 전까지 약정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③ 약정상대자의 약정갱신 신청에 대하여 약정자의 사정으로 약정 만료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약정갱신 심사 완료시까지 약정의 유효기간은 연장된다.
- ④ 약정자가 재평가 시행을 하는 경우 약정상대자는 통보 받은 정지일로부터 또는 제9조에 의해 협력약정이 정지된 경우 약정상대자는 통보 받은 정지일로부터 약정의 효력은 정지된다. 이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되어 약정재개 통보를 받은 지정일로부터 약정의 효력은 재개된다.

제 9 조 (약정의 정지 및 해지) (2015.3.17 개정)

- ① 제8조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일방당사자가 약정을 정지 또는 해지코자 할 때는 상대방에게 본 약정의 정지 또는 해지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상대방이 해당 내용을 통보 받은 해지일(정지를 통해서 해지한 경우에는 통보 받은 정지일)로부터 약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 ② 일방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약정은 정지 또는 해지한다.
해지 이후에는 각 호에 따른 제재사유별 재등록이 일정기간 제한 된다. 다만, 제5호, 제11호, 제12호의 경우에는 위반사항이 중할 경우 영구제한을 할 수 있다.
 1. 등록자격 및 면허, 신고가 취소 또는 정지되었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재등록제한 6개월
 2. 부도, 휴업, 폐업 등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경우: 재등록제한 6개월

3. 대외기관 등에 허위사실유포 등으로 일방당사자에게 불명예를 끼친 경우
: 재등록제한 1년
 4. 제26조의 3에 의한 재평가결과 제15조 및 제16조에서 규정한 기본자격요건 또는 신규등록기준 미달업체 및 협력업체 약정을 유지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업체
: 재등록제한 6개월
 5. 청렴계약의무 또는 「협력업체 윤리행동강령」 제3장 「윤리적 기준」 및 제4장 「사회적 기준」 제11조를 위반한 경우 : 재등록제한 2년 또는 영구제한
 6. 협력약정 및 계약사항을 위배하였을 경우
 - 가. 협력약정 위배 : 재등록제한 2년
 - 나. 중대한 계약사항 위배 : 재등록제한 1년
 - 다. 경미한 계약사항 위배 : 재등록제한 6개월
 7. 협력약정 및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 가. 협력약정 서류 상이 : 재등록제한 2년
 - 나. 계약 서류 상이 : 재등록제한 1년
 8. 종업원에 대한 임금 체불이 2개월 이상인 경우 : 재등록제한 6개월
 9. 사업의 이행과정에서 품질 및 공기 준수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문제가 있는 경우
: 재등록제한 1년
 10. 공동수급협정을 위반하여 사업수주 또는 사업수행에 차질을 초래하였을 경우
: 재등록제한 1년
 11.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 회사의 기술 및 경영기밀을 무단 유포 또는 누설한 경우 : 재등록제한 2년 또는 영구제한
 12. 임·직원이 사업수행과정 외에 불법적으로 회사의 기밀 또는 지식재산 등을 취득하거나 유포, 누설한 경우(법인이 무과실 책임을 진다) : 재등록제한 2년 또는 영구제한
 13. 기타 협력약정의 취지에 따라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협력관계의 유지가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 재등록제한 6개월에서 2년
 14. 협력상대자로부터 협력약정 해지를 요청받은 경우
 15. 협력업체운영업무절차 제26조의2에 따른 정기평가 결과 및 품질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운영심의회에서 심의한 경우 : 재등록제한 6개월
 16. 해당 협력분야가 폐지되었을 경우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심의회 심의시 그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횡수 등을 고려하여 재등록제한기간의 1/2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또한, 제2항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3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경미한 경우 일방약정자는 상대방에게 시정을 촉구할 수 있으며, 이의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제2항을 준용하여 협력약정을 정지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④ 제2항의 해지 사유가 특정 협력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협력분야의 약정만 해지한다. 다만, 제2항 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11호, 제12호, 제13호의 경우는 모든 협력약정분야를 해지할 수 있다.
- ⑤ 일방약정자는 제2항에서 규정한 사유로 인하여 협력약정을 해지코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15조를 준용한다.
- ⑥ 제2항에서 규정한 사유로 인하여 협력약정이 해지된 당사자는 통보 받은 해지일(정지를 통해서 해지한 경우에는 통보 받은 정지일)로부터 위반 사유별로 협력업체 재등록이 제한된다.

제 10 조 (용어의 해석 등)

본 약정의 해석상 이의가 있거나 불명확한 사항은 양사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11 조 (경과조치)

본 협력약정에 의거하여 협력약정을 체결한 업체가 기존의 협력약정을 기초로 하여 체결한 사업은 본 협력약정의 적용대상으로 한다.

년 월 일

약 정 자

주 소 : 경북 김천시 혁신로 269

상 호 :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대표자 : 사장

(인)

약정상대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사장

(인)

별첨 : 협력업체 윤리행동강령 1부.

표준협력약정서

경북 김천시 혁신로 269에 주소를 둔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이하 "약정자"라 한다)와
에 주소를 둔 (이하 "약정상대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사업협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 1 조 (목적)

본 약정의 목적은 약정자와 약정상대자가 국내·외 사업에 공동참여하는데 있어 사업품질 향상과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양사간의 상호협력의 기본원칙을 정하는 데 있다.

제 2 조 (협력분야 및 범위)

①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엔지니어링"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법, 소방시설공사법, 측량법에서 정의한 기술용역 등을 말한다.
2. "전문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전문공사, 전기공사법상의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법상의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법상의 소방시설공사 등을 말한다.
3. "기타지원"이란 설계엔지니어링, 전문 건설공사 부문의 지원 및 기자재 구매 또는 기타 일반 분야의 지원을 말한다.

② 양사는 사업을 공동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전문분야에 상호 협력한다.

1. 설계엔지니어링사업 (분야:)
2. 전 문 건 설 공 사 (분야:)
3. 기 타 지 원 (분야:)

③ 제2항의 협력분야에 대한 협력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의 공동수행
2. 기술인력의 상호지원
3. 사업정보 및 자료의 상호교환

④ 제3항에 규정된 양사간의 협력범위는 상호협의를 의하여 조정 또는 추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약정서를 갱신하여 협력약정을 체결한다.

제 3 조 (협력방법)

① 양사는 국내·외 사업의 공동개발에 필요한 정보 및 기술자료를 상호 교환하며, 본 약정의 목적 및 협력범위 내에서 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② 양사는 국내·외 사업의 공동참여 또는 상호지원이 필요할 경우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요청하고, 쌍방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구체적인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③ 양사는 국내·외 사업개발 및 수행을 위해 기술 또는 인력이 필요한 경우, 양사의 소속인력을 상대방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근무조건은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

제 4 조 (비밀준수 및 지식재산권보호)

① 양사는 본 약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수행 또는 협력과정에서 지득한 상대방의 지식재산권, 기타 정보 및 자료는 본 약정의 기간 만료 전후를 막론하고 비밀을 엄수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영업 또는 비영업 목적으로 단독으로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개할 수 없다.

② 상대방의 지식재산권이 회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계약을 통하여 적법하게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본 약정 체결의 취지에 따라 효율적인 협력을 위해 최소한의 필요한 상대방의 경영, 기술, 인력현황, 사업수행경험은 공개할 수 있으며 제3자에게는 공개할

수 없다.

③ 약정대상자는 약정자가 필요에 의해 보안감사를 실시할 경우,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 5 조 (보증 및 책임)

① 양사는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정보 및 기타 자료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위하여 모든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본 약정에 따른 사업의 공동수행 중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의 배상 책임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며, 개별사업계약 체결 시 상호 협의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정한다.

제 6 조 (상호협조 및 신의성실의무)

① 양사는 본 약정서 제1조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제2조에서 정한 협력분야와 범위에 정한 내용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에 신의성실을 바탕으로 호혜평등의 원칙하에 최대한 상호 협조한다.

② 양사는 상호 당초 협력약정을 체결한 시점에서 확인된 자격과 요건을 협약이 지속되는 전 기간동안 유지할 의무가 있다.

③ 어느 일방에서 제2항의 요건과 자격이 유지되지 못할 경우 협약은 무효로 하며, 이로 인한 제반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다. 다만, 이의 사유가 상대방으로부터 기인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7 조 (분쟁해결)

본 약정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사는 상호이익을 위하여 공정과 화합의 정신으로 상호 원만히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약정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다.

제 8 조 (유효기간)

① 본 약정의 유효기간은 양사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4년간(협력약정 정지 기간 포함)으로 한다. 다만, 동 기간 중에는 매년 정기평가를 통해 협력 약정이 유지되며, 정기평가 결과 부적격으로 판단되면 협력약정이 해지된다. 이 경우 약정상대자가 통보 받은 해지일(정지를 통해서 해지한 경우에는 통보 받은 정지일)부터 약정은 해지된다.

② 약정상대자는 약정 만료 3개월 전까지 약정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약정상대자의 약정갱신 신청에 대하여 약정자의 사정으로 약정 만료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약정갱신 심사 완료시까지 약정의 유효기간은 연장된다.

④ 약정자가 재평가 시행을 하는 경우 약정상대자는 통보 받은 정지일로부터 또는 제9조에 의해 협력약정이 정지된 경우 약정상대자는 통보 받은 정지일로부터 약정의 효력은 정지된다. 이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되어 약정재개 통보를 받은 지정일로부터 약정의 효력은 재개된다.

제 9 조 (약정의 정지 및 해지) (2015.3.17 개정)

① 제8조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일방당사자가 약정을 정지 또는 해지코자 할 때는 상대방에게 본 약정의 정지 또는 해지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상대방이 해당 내용을 통보 받은 해지일(정지를 통해서 해지한 경우에는 통보 받은 정지일)로부터 약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② 일방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약정은 정지 또는 해지한다.

해지 이후에는 각 호에 따른 제재사유별 재등록이 일정기간 제한 된다. 다만, 제5호, 제11호, 제12호의 경우에는 위반사항이 중할 경우 영구제한을 할 수 있다.

1. 등록자격 및 면허, 신고가 취소 또는 정지되었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재등록제한 6개월

2. 부도, 휴업, 폐업 등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경우: 재등록제한 6개월
 3. 대외기관 등에 허위사실유포 등으로 일방당사자에게 불명예를 끼친 경우
: 재등록제한 1년
 4. 제26조의 3에 의한 재평가결과 제15조 및 제16조에서 규정한 기본자격요건 또는 신규등록기준 미달업체 및 협력업체 약정을 유지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업체
: 재등록제한 6개월
 5. 청렴계약의무 또는 「협력업체 윤리행동강령」 제3장 「윤리적 기준」 및 제4장 「사회적 기준」 제11조를 위반한 경우 : 재등록제한 2년 또는 영구제한
 6. 협력약정 및 계약사항을 위배하였을 경우
 - 가. 협력약정 위배 : 재등록제한 2년
 - 나. 중대한 계약사항 위배 : 재등록제한 1년
 - 다. 경미한 계약사항 위배 : 재등록제한 6개월
 7. 협력약정 및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 가. 협력약정 서류 상이 : 재등록제한 2년
 - 나. 계약 서류 상이 : 재등록제한 1년
 8. 종업원에 대한 임금 체불이 2개월 이상인 경우 : 재등록제한 6개월
 9. 사업의 이행과정에서 품질 및 공기 준수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문제가 있는 경우
: 재등록제한 1년
 10. 공동수급협정을 위반하여 사업수주 또는 사업수행에 차질을 초래하였을 경우
: 재등록제한 1년
 11.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사의 기술 및 경영기밀을 무단 유포 또는 누설한 경우와 심각한 보안위규 사항 또는 보안사고 발생 시 : 재등록제한 2년 또는 영구제한
 12. 임·직원이 사업수행과정 외에 불법적으로 회사의 기밀 또는 지식재산 등을 취득하거나 유포, 누설한 경우(법인이 무과실 책임을 진다) : 재등록제한 2년 또는 영구제한
 13. 기타 협력약정의 취지에 따라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협력관계의 유지가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 재등록제한 6개월에서 2년
 14. 협력상대자로부터 협력약정 해지를 요청받은 경우
 15. 협력업체운영업무절차 제26조의2에 따른 정기평가 결과 및 품질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운영심의회에서 심의한 경우 : 재등록제한 6개월
 16. 해당 협력분야가 폐지되었을 경우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심의회 심의시 그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재등록제한기간의 1/2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또한, 제2항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3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경미한 경우 일방약정자는 상대방에게 시정을 촉구할 수 있으며, 이의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제2항을 준용하여 협력약정을 정지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④ 제2항의 해지 사유가 특정 협력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협력분야의 약정만 해지한다. 다만, 제2항 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11호, 제12호, 제13호의 경우는 모든 협력약정분야를 해지할 수 있다.
- ⑤ 일방약정자는 제2항에서 규정한 사유로 인하여 협력약정을 해지코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6조를 준용한다.
- ⑥ 제2항에서 규정한 사유로 인하여 협력약정이 해지된 당사자는 통보 받은 해지일(정지를 통해서 해지한 경우에는 통보 받은 정지일)로부터 위반 사유별로 협력업체 재등록이 제한된다.

제 10 조 (용어의 해석 등)

본 약정의 해석상 이의가 있거나 불명확한 사항은 양사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11 조 (경과조치)

본 협력약정에 의거하여 협력약정을 체결한 업체가 기존의 협력약정을 기초로 하여 체결한 사업은 본 협력약정의 적용대상으로 한다.

년 월 일

약 정 자

주 소 : 경북 김천시 혁신로 269

상 호 :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대표자 : 사장

(인)

약정상대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사장

(인)

별첨 : 협력업체 윤리행동강령 1부.

사업수행실적평가표

평가항목	세부항목	평 가 척 도	평점기준	배점	평점
기 술 [50]	업무수행 능력 [40]	- 책임기술자 사업수행능력 - 기술능력, 관리능력 등에 따라 평가 - 책임기술자 교체 빈도 (-1점/1회당)	S,A,B,C,D	5	
		- 분야 책임기술자 사업수행능력 - 기술능력, 관리능력 등에 따라 평가 - 분야책임기술자 교체 빈도 (-1점/1회당)	S,A,B,C,D	5	
		- 사업참여자 기술능력 수준 - 계약목적 달성에 요구되는 수준 대비 - 사업참여자 교체 빈도(-0.5점/1회당)	S,A,B,C,D	5	
		자원준비 여부(code&Std., 설계용S/W 등)	S,A,B,C,D	5	
		- 설계점검(Checkprint) 및 설계검토 수행여부 - 점검결과 및 검토결과 제출비율(미제출 건수/전체 제출건수X100)	(-1점/5%)	5	
		- 제출 설계성과물의 완성도 - 성과물 접수 시 불합격 비율(불합격건수/전체 제출 건수 X100)	(-1점/5%)	15	
	업무협조 [5]	기술 업무 및 계약 지원	S,A,B,C,D	5	
	중첩도[5]	- 책임기술자 및 사업참여자 업무중첩도 여부 - 3개 이상 사업수행 시 적용	(-1점/3개)	5	
품 질 [15]	성과품질 [5]	- 사업수행기간 또는 품질활동(감사 등) 수행 중 중대결함이나 심각한 품질문제 발생 시 - 품질보증(경영) 계획 및 운영상의 중대결함 - 중대 설계결함으로 인허가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설계성과물에 의한 건설 및 운영 중 중대 설계 결함으로 광범위한 재평가, 재설계 또는 수리가 필요한 경우	유(0)/무(5)	5	
	품질활동 [10]	ISO 9001 품질시스템 인증서 유지 여부	유(5)/무(0)	5	
		해당 사업 품질보증(경영)계획서 승인 여부	유(5)/무(0)	5	
공 정 [25]	일정준수 [20]	- 성과물 제출일정 준수 - 성과물, 공급자 도서 검토	(-1점/5%)	<u>20</u>	

사업수행실적평가표

평가항목	세부항목	평 가 척 도	평점기준	배점	평점
기 술 [50]	업무수행 능력 [40]	- 책임기술자 사업수행능력 - 기술능력, 관리능력 등에 따라 평가 - 책임기술자 교체 빈도 (-1점/1회당)	S,A,B,C,D	5	
		- 분야 책임기술자 사업수행능력 - 기술능력, 관리능력 등에 따라 평가 - 분야책임기술자 교체 빈도 (-1점/1회당)	S,A,B,C,D	5	
		- 사업참여자 기술능력 수준 - 계약목적 달성에 요구되는 수준 대비 - 사업참여자 교체 빈도(-0.5점/1회당)	S,A,B,C,D	5	
		자원준비 여부(code&Std., 설계용S/W 등)	S,A,B,C,D	5	
		- 설계점검(Checkprint) 및 설계검토 수행여부 - 점검결과 및 검토결과 제출비율(미제출 건수/전체 제출건수X100)	(-1점/5%)	5	
		- 제출 설계성과물의 완성도 - 성과물 접수 시 불합격 비율(불합격건수/전체 제출 건수 X100)	(-1점/5%)	15	
	업무협조[5]	기술 업무 및 계약 지원	S,A,B,C,D	5	
	중첩도[5]	- 책임기술자 및 사업참여자 업무중첩도 여부 3개 이상 사업수행 시 적용	(-1점/3개)	5	
품 질 [15]	성과품질 [5]	- 사업수행기간 또는 품질활동(감사 등) 수행 중 중대결함이나 심각한 품질문제 발생 시 - 품질보증(경영) 계획 및 운영상의 중대결함 - 중대 설계결함으로 인허가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설계성과물에 의한 건설 및 운영 중 중대 설계 결함으로 광범위한 재평가, 재설계 또는 수리가 필요한 경우	유(0)/무(5)	5	
	품질활동 [10]	ISO 9001 품질시스템 인증서 유지 여부	유(5)/무(0)	5	
		해당 사업 품질보증(경영)계획서 승인 여부	유(5)/무(0)	5	
공 정 [20]	일정준수 [15]	- 성과물 제출일정 준수 - 성과물, 공급자 도서 검토 - 제출건수 대비 지연건수 발생율(지연건수	(-1점/5%)	15	

평가항목	세부항목	평 가 척 도	평점기준	배점	평점															
		/ 전체제출 건수X100)																		
	제출지연[5]	- 성과물 누적제출지연 - 성과물, 공급자 도서 검토 - 최초 및 재제출 지연비율(누적지연건수/ 전체제출 건수X100)	(-1점/5%)	5																
사업관리 [10]	사업관리 [10]	- 사업 계획/준비 및 종결 미흡 - 수행계획서, 종결보고서 지연/미제출 등	(-1점/1회당)	10																
보안 [5]	보안감사 [5]	- 보안 감사 실사결과 - 평가대상 직전년도 실사 점검 평균 <table border="1"> <tr> <td>300점 이하</td> <td>275점 미만</td> <td>250점 미만</td> <td>200점 미만</td> <td>100점 미만</td> </tr> <tr> <td>275점 이상</td> <td>250점 이상</td> <td>200점 이상</td> <td>100점 이상</td> <td></td> </tr> <tr> <td>S</td> <td>A</td> <td>B</td> <td>C</td> <td>D</td> </tr> </table>	300점 이하	275점 미만	250점 미만	200점 미만	100점 미만	275점 이상	250점 이상	200점 이상	100점 이상		S	A	B	C	D	S,A,B,C,D	5	
300점 이하	275점 미만	250점 미만	200점 미만	100점 미만																
275점 이상	250점 이상	200점 이상	100점 이상																	
S	A	B	C	D																
가 점 [2]	정보보안 준수	- 정보보안체계구축 - 공인된 정보보호경영체계(ISMS)또는 ISO27001인증서 보유	있음:2 없음:0	2																
별 점	계약관리	- 계약 요건의 심각한 위반 - 재하도급 미승인, 참여자 변경 미승인 등	(-2.5점/1회당)	-																
	파트너쉽	- 발주자의 업무행일정에 차질을 초래하여 경고발생 - 공식 문서(공문, FAX 등)	-5점/발생시	-																
계				100																

계약상대자		대표자		협력분야	
계 약 명				계약금액	
계약기간		평가기간		해당년도 기성금액	
사업책임자		평가자	소속 : 직위: 성명 : (인)		

비고
1. 각 평가척도의 평가대상은 해당 평가기간 중에 일어난 사실을 기준으로 한다. 2. 평가척도 중 감점요인의 귀책사유가 계약상대자에게 없는 경우는 평점 계산시 제외한다. 3.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평점기준 - S (탁월, 5점), A(우수, 4점), B(보통, 3점), C(미흡, 2점), D(불량, 1점) - 감점의 경우 최저점은 0점으로 한다. 나. 분야책임기술자는 참여기술자와 통합 가능 다. 가점은 평가항목(기술, 품질, 공정, 사업관리, 보안) 취득점수가 평가항목별 배점한도에 부족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부여 라. 품질요건적용 비해당 사업의 경우 품질평가 점수는 기술, 공정, 사업관리 및 <u>보안</u> 배점율로 환산 적용 - 산식 : [(기술+공정+사업관리+보안 산출점수) / 85] x 15 마. 보안요건적용 비해당 사업의 경우 보안평가 점수는 기술, 품질, 공정 및 사업관리 배점율로 환산 적용 - 산식 : [(기술+품질+공정+사업관리 산출점수) / 95] x 5 바. 품질 및 보안요건 적용 비해당 사업의 경우는 기술, 공정, 사업관리 배점율로 환산 적용 - 산식 : [(기술+공정+사업관리 산출점수) / 80] x 20 4.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위 표에 따른 평가 기준을 따르지 않고 0점을 부여한다.